##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정일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204

발의연월일: 2025. 2. 17.

발 의 자:정일영·정동영·박지혜

이재관 · 김남근 · 황정아

장종태·최민희·김 윤

손명수 • 전진숙 • 조인철

백승아 · 문금주 의원

(14위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상대방등에게 우편·전화·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동을 스토킹행위 중 하나로 규정 하고 있음.

위와 같은 스토킹행위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 또는 스토킹범죄의 조사·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이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.

이러한 결정에 따라 스토킹행위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이 금지되며 상대방등에 대한 전 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이 금지됨.

그러나 현행법은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접근금지에 대하여 우편을 통한 접근은 명시하지 않고 있어 편지 등 우편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게 접근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에 피해자에 대한 우편을 이용한 접 근 금지를 추가하여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자 함 (안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9조제1항제3호). 법률 제 호

##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1항제2호 중 "전기통신을"을 "전기통신 또는 우편을"로 한다. 제9조제1항제3호 중 "전기통신을"을 "전기통신 또는 우편을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제4조(긴급응급조치) ① 사법경찰    | 제4조(긴급응급조치) ①      |
| 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수 있다.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1. (생 략)              | 1. (현행과 같음)        |
| 2.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     | 2                  |
| 한 「전기통신기본법」제2조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제1호의 <u>전기통신을</u> 이용한 | <u>전기통신 또는 우편을</u> |
| 접근 금지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② (생 략)               | ② (현행과 같음)         |
| 제9조(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     | 제9조(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  |
| 조치)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     | 조치) ①              |
| 원활한 조사·심리 또는 피해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
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(이하 "잠정조치"라 한다)를 할수 있다.

- 1. 2. (생략)
- 3.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, 가족에 대한 「전기통신기본 법」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. • 4. (생 략)
- ② ~ ⑦ (생 략)

| 1. • 2. (현행과 같음)   |
|--------------------|
| 3                  |
| <u>전기통</u>         |
| <u>신 또는 우편을</u>    |
|                    |
| 3의2. · 4. (현행과 같음) |

② ~ ⑦ (현행과 같음)